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
기업의 기술력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 주도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「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」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,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2025년 3월 5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공고기간 : 2025. 3. 5(수) ~ 3. 24(월) 16:00 까지
□ 접수기간 : 2025. 3. 11(화) ~ 3. 24(월) 16:00 까지
□ 사업목적
O 전북특별자치도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(전자, 전기, 농기계, 모빌리
티, 로봇등) 우수제품을 디자인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글로벌제품 개발
- 디자인상품 개발 프로로세스 확립으로 고객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개발로
국・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기업성장을 위한 전(全)주기 개발지원
- 개발자 중심의 시제품 제작이 아닌, 경쟁사 대비 우수한 상품으로써 고객
과 사용자에게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중심의 시제품 제작
□ 지원대상
○ (수혜기업) 2022~2024년 매출액 평균50억 이상 전라북도 소재 중소·중견제조기업
-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본사, 지점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기업(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전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)
□ 지원규모 : 2개사 내·외(과제당 최대 80,000천원) 자부담 20%이상
□ 사업기간 : 총 8개월 내·외
□ 신청분야 : 제품디자인(필수), 브랜드디자인, 마케팅, 서비스디자인,
기타 등 기업의 필요 분야 선택 신청

2. 지원내용

- □ 단계별 지원내용
 - \bigcirc ① 신제품 디자인컨셉 개발 \rightarrow ②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프로세스 확립 \rightarrow ③ 시제품제작

지원구분	내 용
1단계 신제품 디자인컨셉 개발	○신제품기획 • 관련산업, 기술, 시장조사(사용자) 및 경쟁사 분석 • 디자인 혁신상품의 개발 방향성 및 기획 구체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 • 신제품관련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(상표, 디자인) 및 필요한 디자인 컨텐츠 조사 • 디자인 컨셉 개발,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제품·브랜드 디자인 개발 • 2D, 3D 후보안도출을 통한 제품로드맵을 위한 선행디자인 제안 ※ 우수제품 핵심 유저분석, 프로모션 전략 등

▼ 중간평가

	○디자인개발 (디자인 전문가 자문참여)
	• 신제품 디자인프로세스 확립
2단계	• 디자인리서치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
디자인개발	• 2D, 3D 수정안 및 최종안 3D 렌더링, 시방서등, 디자인 및 상표권 출원
	• 워킹목업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양산을 위한 시제품 설계
	• CMF(Color Material Finishing) 개발 및 적용

▼ 디자인결과 최종평가 (평가위원회)

	○시제품제작
3단계	• 상용화 가능한 시제품 제작
시제품제작	• 구조해석 및 검증보고서
	•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▼ 최종성과물 전시

디자인 품평회	○디자인 품평회 • 결과평가 위원 및 전문가 참여 • 도내 디자인기업 참여
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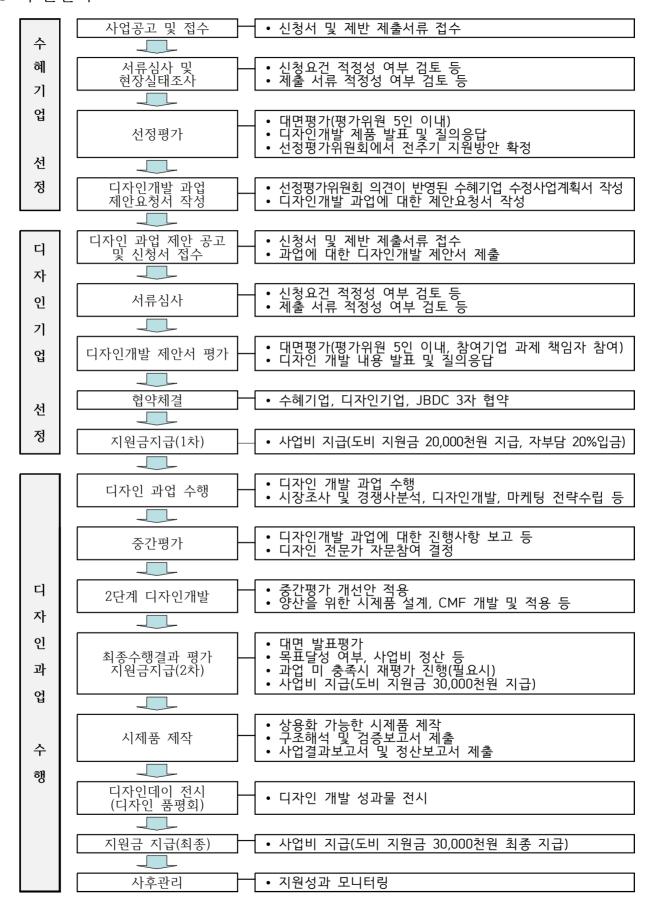
- □ 지원금액 및 사업비 지급절차
 - O 지원금액
 - (총사업비) 100,000천원, (지원금) 80,000천원, (기업부담금) 20,000천원
 - O 사업비 지급절차
 - ① **(기업부담금)** 개발비의 20%(20,000천원) 선금 지급(수혜기업→디자인기업)
 - ② (1차 지원금) 협약 후, 지원금 20,000천원 지급(전북TP→디자인기업)
 - ③ (2차 지원금) 중간평가 완료 후, 지원금 30,000천원 지급(전북TP→디자인기업)
 - ④ (3차 지원금) 최종평가 완료 후, 지원금 30,000천원 지급(전북TP→디자인기업)
 - ⑤ (부가가치세) 최종평가 완료 후, 총 개발비의 10% 부가가치세 지급(수혜기업→디자인기업)
 ※ 기업세금계산서 발행(1차 기업부담금 선금 입금 후 / 2차 최종 정산 후)

○ 지원금액 및 개발기간

지원구분	내 용	
1단계 신제품기획	• 1차 지원금 20,000천원 • 2개월내·외	• (지원금액) 과제당 최대80,000천원,
2단계 디자인개발	• 2차 지원금 30,000천원 • 4개월내·외	총 개발비용의 80%, • (자 부 담) 최대 20,000천원, 총 개발비용의 20% • (개발기간) 8개월이내
3단계 시제품제작	• 3차 지원금 30,000천원 • 2개월내·외	

- ※ 지원금액 단계별 과업에 따라 개발금액을 자유롭게 편성 가능
- ※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결과물은 "2025년 디자인데이"에 전시 필수

○ 추진절차



4.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□ 평가방법

현장실태조사(3월 말)

· 외부전문가 기업 현장방문 실태 조사 (신청자격 검토, 주생산품목 확인 등 제조현장 방문 조사)

선정평가위원회(4월 초)

· 신청업체 간략 소개, 신청과제 개요 등 PT발표 (발표 15분, 질의응답 20분, 발표 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중요 내용 위주로만 발표)

□ 평가위원 :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, 외부전문가 등

□ 평가기준

○ 평점 70점 이상 상위 순으로 선정

O 평점 70점 미만 : 선정 제외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배점	세부항목
사업화 의지 및 지원 필요성	5	- CEO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사업화 의지 - 개발과제 필요성
기업 보유 우수기술 및 제품개발역량	5	- 기업보유 기술수준 및 제품현황 - 보유기술 및 제품의 발전가능성
사업화 가능성 및 성과활용 계획	15	- 신규 디자인개발 중요성 -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및 양산전략
매출 증가 가능성 및 계획	10	- 개발 결과물의 매출 및 수출 증가 가능성 - 매출증대 투자계획
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	15	- 개발제품 상용화로 매출 증가,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
과제이해도	10	- 개발대상에 대한 현황분석 및 이해도 - 디자인 컨셉 및 시장분석 등
디자인개발 프로세스 및 사후관리	5	- 디자인 개발 전략에 따른 목표·내용·범위의 명확성 - 양산화에 따른 감리 및 디자인 사후 관리 계획
필요성 및 활용가능성	10	- 신규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및 디자인기여도 - 디자인 개발 가능성 제시 여부
디자인개발 역량	10	- 참여인력 구성, 업력 등 디자인개발 역량 - 기업의 디자인 추진능력
디자인개발 지원 파급효과	15	- 개발에 따른 직·간접적 시너지 및 활용 - 상용화 및 판매 전략의 현실성, 매출 및 고용 기대효과 등

5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□ 신청서류
 - 공통서류 및 별도서류 사본(※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- □ 구비서류
 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온라인 접수(R&D종합정보시스템)
 - ※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R&D종합정보시스템(https://rnd.jbtp.or.kr), 전북테크노파크 (https://www.jbtp.or.kr), 전북디자인센터(https://jbdc.jbtp.or.kr)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
- □ 수혜기업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	① 사업신청서 (서식1) ② 사업계획서 (서식 2)	1부 (hwp 파일 제출)
	③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서 (서식 3)	1부
	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1부
수혜기업	(5) 최근 3년간 연매출 증빙 -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* 간편 장부 대상자 및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	택 1부 ('22~'24년도 매출 증빙)
	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(*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)	각 1부
	⑦ 상시 근로자 수 증빙 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-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	택 1부 (1개월 이내 발 급분)
	⑧ 과제에 해당하는 제품의 특허 출원(등록) 증	해당시

^{*} 기업 사정상 '24년도 재무제표 결산 미완료시 '25년 부가세 신고서류로 대체가능

※ 제출서류 순서대로(①~⑧) 저장 후 압축(zip파일)하여 제출

O 문 의 처 :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디자인지원팀

○ 문의전화 : 063-839-0203 이점윤 책임 연구원

O 문의메일 : lee1812@jbtp.or.kr

6. 지원 제한대상 및 기타 유의사항

- □ 지원 제한대상
 - O 디자인기업과 수혜기업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(지분공유 등)인 경우
 - O 수혜기업이 개발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(지원금 환수)
 - O 동일아이템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
 -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 또는 연체한 경우
 - O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
 - O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 - O 심의결과 부적합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
- □ 기타 유의사항
 -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(적격과제 없을시 재공고 진행)
 - O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됨
 - 특정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
 - 기타 수혜·수행기업 간 사전 부정 담합 등 부정사유 적발시 (재)전북테크 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 제한됨
 - ※ 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
 - 연 1개 과제 재평가 디자인기업 (다음연도 1건 사업 참여 제한)
 -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 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(2020.1.1) 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(공공재정지급금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재제부가금

- ◈ 허위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-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: (받은 지원금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◆ 목적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- ※ 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 지침」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
- ※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지 침」을 따름